

1. 통합징수사업

< 연도별 예·결산액 >

(백만원)

구 분	'14결산	'15결산	'16결산	'17결산	'18예산
통합징수사업	86,510	77,818	83,330	80,476	78,502

□ 사업목적 및 내용

- 고지관리
 - 무결점 고지를 통한 보험재정 안정성 확보
 - 전자고지 확대를 통한 고지서비스 효율화
- 수납관리
 - 가입자 중심의 수납체계 운용으로 고객 만족도 제고
 - 보험재정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수납정산체계 구축
- 체납관리
 - 체납자 관리 강화 및 징수업무 효율화로 보험재정 안정성 제고
 - 업무개선 및 우수 징수기법 개발로 지속적 제도 발전 도모
 - 징수사각지대 해소 등 체납보험료 적정관리
- 고객서비스 지원
 - 고객만족도 상위권 달성을 위한 고객중심 경영체계 구축
 - 최고의 CS경영을 통한 국민의 만족도 향상
- 종합기획조정
 - 사회보험 통합징수사업의 수행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편성
 - 정부관련부처(기획재정부, 보건복지부, 고용노동부)와의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협의 등
 -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
- 노사후생복지
 - 내실 있는 복지제도 운영으로 임직원 만족도 제고 및 사기진작

□ 추진근거

○ 지원근거

-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(업무 등), 제35조(회계), 제36조(예산), 제39조(결산), 공단정관 제70조 (결산), 회계규정 제110조(결산)
- 국민연금법 제102조의2(건강보험공단에 출연), 시행령 제76조의2(출연금의 산정 기준 및 용도 등)
- 고용보험법 제80조(기금의 용도)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(기금의 용도)
-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(예산의 편성), 제42조(운영계획의 수립), 제43조(결산서의 제출)

○ 추진경위

-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기획단 출범('08.7.17) : 보건복지부
- 국민건강보험공단 「사회보험징수통합 실무추진단」 출범('09.6.1)
- 사회보험 징수통합관련 노·사·정 합의 및 노사정실무협의회 구성('09.6.4)
- 전환인력 건강보험공단 징수인력 배치('11.1.1)
 - 건강보험공단(1,512명), 국민연금공단(712명), 근로복지공단(317명)
- 사회보험 통합징수 시작('11.1.1)
 -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를 위한 고지·수납·체납 관리

2. 정보화사업

< 연도별 예·결산액 >

(백만원)

구 분	'14결산	'15결산	'16결산	'17결산	'18예산
정보화사업	-	-	976	2,020	1,792

□ 사업목적 및 내용

○ IT기획

- 사회보험 통합징수 정보시스템에 대한 최적의 운영환경 조성으로 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
- 각 공단(건강보험/국민연금/근로복지) 및 수납기관 간 협업

□ 추진근거

○ 지원근거

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(법률 제9690호, 2009. 5. 21 공포, 2011. 1. 1 시행)
- 「국민연금법」 (법률 제9691호, 2009. 5. 21. 공포, 2011. 1. 1. 시행)
-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9989호, 2010. 1. 27. 공포, 2011. 1. 1. 시행)이 개정
 - 2011. 1. 1일부터 '4대보험 통합징수업무'개시

○ 추진경위

- 통합징수 장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
 - 징수통합 정보시스템 S/W부문 유상유지보수 추가('12.1.1)
 - 징수통합 정보시스템 H/W부문 유상유지보수 추가('13.1.1)
- 2012년 각 공단(건강보험/국민연금/근로복지)과 징수통합 정보연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인력 각 공단에 1명씩 상주 지원

관련 : 정보연계 유지보수 직원을 각 공단 전담배치하여 운영하기로 결정
(복지부 징수통합 추진기획단 정보화실무협의회 제19차 회의, '11.3.18.)

- 2015년도 「건강보험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계약 체결('15.2.17)

3. 행정지원사업

< 연도별 예·결산액 >

(백만원)

구 분	'14결산	'15결산	'16결산	'17결산	'18예산
행정지원사업	-	202,425	203,461	204,177	196,551

□ 사업목적 및 내용

- 총인건비
 - 보수 지급의 합리성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
 - 정부 가이드라인 범위 내 임금 인상 시행
 - 임직원 복리후생 및 사회보험료 납부
- 통합징수 기본경비
 - 통합징수 관련 본부 및 지역본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

※ (기본경비) 사업을 수행하는 통상적인 부서 운영에 필수 불가결하게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, 특정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 운영을 위하여 인원수 등과 비례하여 산출하는 운영경비 ... 관서업무추진비, 특근매식비, 부서운영비 등

□ 추진근거

- 지원근거
 - 공기업·준정부기관 예산편성/집행지침, 임금협약, 단체협약, 보수규정
 - 정부 예산편성지침준용, 기재부 “공기업·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집행지침” 준수
 - 2018년도 통합징수사업 예산안 편성기준('17. 2월)
- 추진경위
 - 기획재정부의 ‘공기업·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’ 등
 - 정부분류 방식(기본경비) 및 예산체계 도입으로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대외 신뢰성 및 수용성 제고

4. 재무지출사업

< 연도별 예·결산액 >

(백만원)

구 분	'14결산	'15결산	'16결산	'17결산	'18예산
재무지출사업	-	-	-	-	10,465

사업목적 및 내용

- 경영평가 성과급 및 통상임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
 - 2018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 예비비

추진근거

- 지원근거
 - 공기업·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/집행지침, 임금협약, 단체협약, 보수규정
- 추진경위
 - 통합업무 수행인력에 대하여 2012년도부터 지급